BMW Financial Services Korea

위법계약 해지 요청서

본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본인과 귀사와 체결한 금융상품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합니다.

■ **고객정보**

계약자 명		**생년월일**	
연 락 처		**차량번호**	

■ **법 위반사실 및 근거**

금융상품명	
계약체결일	20 년 월 일
법 위반사실 인지일	20 년 월 일
법 위반사실	
증빙자료	

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에 따라 **법 위반사실 및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요청서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
*위법계약이란 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금지등 관련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•제3항,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.
*계약해지의 요청은 법령에 따른 검토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[인]

*** 계약서 상의 인감 날인 (계약서 서명 후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) 必 ***

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| TEL: 1577-5822 | FAX: (02)3018-1628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2층 (우) 04631 | 홈페이지: https://www.bmwfs.co.kr/